

韓國一部農村地域의 出生事件과 出生申告에 關한 研究

延世大學校 醫科大學 江華地域社會 保健院

池貞玉·金泳起·金琦淳

—Abstract—

A Study on the Usefulness of Birth Registration Data in Rural Korea

Chung Ok Ji, CPHN, Young Key Kim, MA, MS.

Ki Soon Kim, MD, MPH

Kang Wha Community Health Teaching Project,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The improvement of civil registration requires continuous study rather than periodic efforts. More and better statistics, however, are urgently required to formulate development programs and planning. Data obtainable from the civil registration are usually marred by errors of omission which are difficult to correct.

This study aimed at finding out the problems occurring when a set of crude birth registration data in a rural area is used. Data Sources of this study are: 1) For birth registration: government birth registration records obtained from myun office and other government offices. 2) For the actual number of births: birth and child records from the Kang Wha Community Health Project

The study area is Sunwon Myun and Naega Myun in Kang Wha Gun, Gyeonggi-do. The reference period for the accumulated data is one full year: Jan. 1st 1975-Dec. 31st 1975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If the number of registered births is compared with the actual number of births which occurred in the target area, the former is far greater than the latter. The general assumption usually is, that the actual number of births exceeds the registered number of birth in Korea. The observation from this specific study in this specific target area, shows the opposite trend. The number of births which were registered is 550. This is more than two times as much as the number of births which actually occurred during the year of 1975 in the study area namely 256.

The difference comes mainly from the fact that many cases of births from other areas were registered in the target area. In other words birth is not registered where it occurred but where the permanent residence address is. Among 550 births registered in the target area 66% did not occur in the target area.

Only one third of all registered births were registered within the legal period for birth

registration which is 2 weeks.

34% of the registered births actually occurred in 1974, but were registered in 1975.

In 55% of the cases a difference was observed between the actual date of birth and the registered date of birth.

From the 256 births which occurred in the target area, only 153 births(59%) were registered at the myun office and the remaining 130 births (41%) were not registered there in the year of study.

6% of the 550 cases listed as registered have no separate registration sheets. Nevertheless, they definitely have been registered in the birth list at the myun office. 3% of the 550 cases are not recorded in this list but have a separate registration sheet at the myun office.

In conclusion, birth registration data have many errors and problems. Their usefulness as a source for vital and other statistics should be reconsidered. A series of sound methodological studies will be necessary to establish their actual usefulness. A continuous and permanent compulsory system of birth recording is needed.

1. 서 론

人口動態統計는 여러가지側面에서廣範圍하게利用되고 있다. 특히保健關係計劃樹立 및 評價資料로서 많이利用되고 있다. 따라서人口動態統計는 단순한合法的文書로서의 가치가 있을뿐만 아니라 특정기간내의發生事件을 재는尺度로서도意味가 있다.統計의最近性과正確性을 확보하기 위하여申告記錄은 사건발생후 신속히作成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人口動態統計中 특히出生申告가法定期間내에 제대로申告되지 않고 있다: 경제가회원조사 통계국조사¹⁾ 결과에 의하면 66년도推定出生數에 대한當年申告件數의比率은 34%이며, 梁동²⁾의 조사에 의하면出生數의57%가當年내에호적이記載되어 있고, 그중 20%만이法定期日内에申告된 것으로나타났다.

人口動態統計의申告率이낮고 특히法定期日内申告率이낮은것은現行申告制度에서사건의신고자체를確認및責任을지는제도(과정)가없는것이그理由中하나인것같다.政府에서實施하고있는센서스는人口動態統計신고결과의正確性여부를검토할수있는중요한자료로서이용될수있다. 그러나센서스는응답자의사건에對한기억력, 응답자의성격, 태도등의영향으로動態事項을완전하게소급하여把握하기힘들다는문제점을지니고있다.

一般的으로出生數에對한出生申告率은推定出生數의34%로현저히낮게신고되어있는것이상태이다. 그러나이와같은일반적인예에도불구하고調查地域내의申告者를檢討한結果75년도실제出生數는256명이며,面事務所를통해군청에보고된出生件數는

535명으로실제同地域同期間의出生數보다2배가넘는申告數를보였다. 출생신고서는517매, 출생신고접수부(호적접수장)는535건이나출생아수는256명이다.

따라서본연구는일부농촌示範保健事業地域에서人口動態發生中출생사실과신고形態를調査하여그差異가어느정도나고있으며왜그러한差異가나타나는가를分析檢討하고자하는것이일차적인目的이며申告制度에問題點이무엇인가를밝히는데또한目的이있다. 이結果에의해合理的申告方案을모색하는데도움을주고자하여人口動態가가장많이利用되는保健事業및公眾保健事業에효율적으로이용가능한資料를확보할수있는方向을提示하여現行制度를改善하는데자극이되고자시도하였다.

2. 研究方法

가. 研究對象

경기도 강화유 13개읍 면중 仙源面과 内加面, 2개면을對象으로調査하였다. 강화유은경기도西端에위치했으며陸地와는다리로서연결되어있는섬이다. 이는도합15개의크고작은도섬들로이루어졌으며면적421km²로서인구는103,128(1976년도강화유통계연보)이며, 주민들은주로農業과水產業에從事하며특히作物로인삼재배가있고특수부업으로는花紋席제조등을볼수있다.

仙源面과內加面은연세대학교保健示範事業地域으로서강화도中央에東西로위치했으며인구수는仙源面이6,107명內加面이6,801명이다.(76년도연세대학

교 강화지역 사회 보건원 조사)

1975년 1월 1일부터 同年 12월 31일까지 發生한 실제出生事件을 比較해 본 결과 對象者 數는 653명이었으며 이 653명에 관한 記錄이 본 調査의 대상이 된다.

나. 資料의 出處 및 蒐集 方法

본 조사의 자료의 출처는 크게 두가지로 분류하였다. 즉 그 하나는 행정망을 통해 접수된出生申告 기록이 있고 다른 하나는 영유아 등록부로서 보건지소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두 자료의 수집과정을 출처와 제도 등으로 나누어 보았다.

1) 出生申告 制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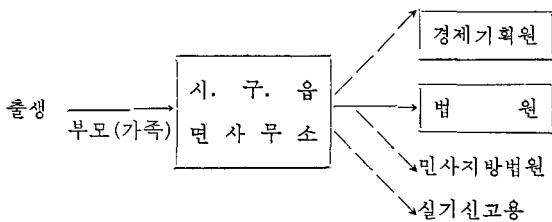


Fig 1. 출생신고 제도

人口動態 統計中 출생통계는 행정 단위인 시, 구, 읍, 면 단위에서 법적 報告人인 부모 혹은 직계가족에 의해 호적에 신고되고 모집되어 통계 기구인 경제기획원 조사통제국에서 편집 공포되는데 신고 장소는 본적지와 주소지에서 할 수 있으며 신고 구분으로는 適期申告(사전 발생 2주내)와 失期申告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적지 신고인 경우 분만(출생)이 발생하면 해당 읍 면 동사무소에 신고하게 되고 각 사무소에서는 신고 구분에 따라 適期申告인 경우 신고서를 2부 작성하여 법원(호적신고용), 경제기획원(인구동태 통계용)에 각각 1부씩 제출하게 되며 失期申告인 경우 신고서를 3부 작성하여 법원과 경제기획원 그리고 민사지방법원(실기신고용)에 각각 1부씩 제출하게 된다. 주소지 신고인 경우 해당 읍 면, 동사무소에 신고하고 각 사무소에서는 신고구분에 따라 適期申告인 경우 신고서를 3부 작성하여 법원, 경제기획원, 민사지방법원에 각각 1부씩 제출하고 失期申告인 경우 신고서를 4부 작성하여 법원, 경제기획원, 민사지방법원, 실기신고용으로 각각 쓰이게 된다.

2) 資料의 蒐集方法 및 資料의 出處

본 연구를 위한 자료의 수집은 1976년 11월부터 1977년 1월까지의 3개월간에 걸쳐서 시행되었는데 分析의 對象이 된 자료의 종류는 앞에서 밝힌바와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1) 출생신고서 및 출생신고 접수대장

첫째, 정부의 기록 행정망을 통해 얻은 資料로서 각 면 사무소 호영계에 접수된 "75년도 호적 접수장"에서出生申告(접수 년월일, 성명, 주소등)를 뽑은 다음 접수자 별로 자세한 事項을 알기 위해 면사무소에서 경제기획원으로 제출한 출생신고서를 경기도청 통계과에서 내용 전부를 옮겨 적어 왔다.

(2) 영유아 등록부

둘째로는 이 지역이 保健示範事業地域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써 영유아 등록부를 들 수 있다. 이는 선원면과 내가면의 출생아를 69년부터 년도별로 기록한 것으로 2부가 作成되어 마을과 보건지소에 동시에 보관하고 있으며出生, 死亡, 轉入, 轉出등의 사건이 발생 즉시 기록될 수 있다. 이것은 가정기록부³⁾와 임산부 등록부를 모체로 하고 있으며 기록은 가정간강요원⁴⁾이 일차 책임을 지며 다목적요원⁵⁾과 보건간호원이 매주 1회씩 기록을 겹겹하고 있다.

본 조사 지역에서는 시법사업의 하나로 행정 리 단위에 가정간강요원 제도를 두어 정보를 받고 있다. 이 가정간강요원은 면 보건요원(다목적 요원)과 직접 연결되어 업무보고 책임과 감독을 받으며 가정방문, 보건교육 정보제공(문제의 조기 발견과 후송체계 모색 등) 등의 業務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담당리에 분만이 발생하면 가정방문하여 출생을 確認하고 영유아 등록부 및 가정기록부에 기재하고 매주 1회 개최하는 보건지소 모임(가정간강요원 모임)에서 보고하게 되며 보건요원은 보고 받은 정보를 보건지소용 영유아 등록부에 기재하고 재방문(산후관리 목적으로)하여 출생 사실을 확인한다. 이러한 출생사건 발생기록과 보고등은 임산부 등록부와 연결되어 있어 거의 전부 把握되고 있으며 신속한(매주)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다. 資料處理 및 分析方法

앞서 말한 두 종류의 자료(출생신고서, 영유아 등록부)를 서로 비교하여 개인별로 각 변수(접수년월일, 출생년월일, 주소지, 본적지, 성명, 성별, 부(모)성명 주민등록과 호적부에 기재 유무, 영유아등록 유무 등)를 설정하였다.出生申告 유무와 주소지, 거주지 등을 확 인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주민등록부와 호적부를 하나 하나 열람하여 記載유무를 확인하여 적기신고, 지연신고, 및 미 신고율을 추정계산하였고 이 지역에 申告된 타 지역의 출생사건수도 산출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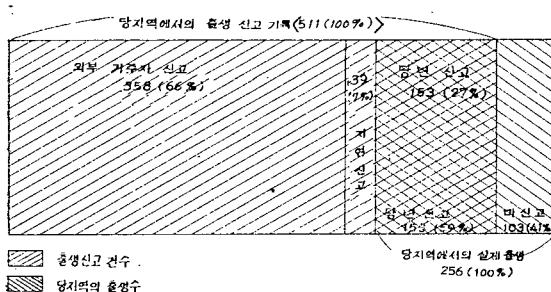
여분석하였다.

3. 結果 및 考案

1) 출생신고수 및 실제출생수

Fig 2. 출생신고 및 실제출생 비교도표

본 연구의 총 대상 건수는 653으로 이것은 영유아 등록부 자료에서 나온 256건과 출생신고서 자료에서 나온 517건 그리고出生申告書 등록부에서 33건등을 합친 것으로 이들이 일부는 서로 중복되어 총 대상 건수는 653 건이었다. (표 1 참고)



地域 대상건수를 비교해 보면 내가면 5개 법정리에 대상건수는 339이며 그 중 279예가出生申告된 어린아이이고 60예는 75년도 영유아 등록부에만 기재되어 있는 것이다. 선원면은 8개 法定里에 대상건수는 314이며 그중 271예가 출생신고된 영유아이고 43예가 75년도 영유아 등록부에만 기재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선원면에서 12건, 내가면에서 11건 도합 33건은 출생 등록부 접수 대장에서 追加로 발견된 건수이다. (즉 신고서는 없고 접수대장에만 기재되어 있는 건수이다).

표 1. 지역별 대상건수

선 법 정 리	대 상 건 수
금 월 리	48
연 리	43
지 산 리	48
신 정 리	32
창 리	56
선 행 리	31
냉 정 리	36
계	314

내 법 정 리	대 상 건 수
고 천 리	98
오 상 리	80
외 울 리	62
황 청 리	68
구 하	31
계	339

2) 영유아 등록과 출생신고 건수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영유아 등록부는 1975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등 지역내에 상주하는 인구 가운데서出生한 출생자를 영유아 등록부에 기재한 것이며 출생신고 건수는 이와는 달리 등 지역의行政機關에 1975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만 1년간에 신고된 신고 건수를 말하고 있다. 영유아 등록부에 기록된 자료에 의하면 등 기간의 등록건수는 선원면에서 120건, 내가면에서 136건으로 도합 256건이다. 이 자료에 의하면 이 지역의 출생율은 인구 1,000명당 선원면이 19.6이고 내가면이 19.9가 된다.

영유아 등록부는 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서 발생한發生件數를 전부 망라한 것이기에 이 지역의 出生率을 계산하는데正確性을 기할 수 있다. 그런데 출생신고서 및 출생신고 접수대장(호적접수부)에 의한 수는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원면에서 270건, 내가면에서 280건, 도합 550건이 된다. 그러나 이것은 ① 출생신고서와 ② 호적접수부의 출생기록수를 검토해서 각 개인별로 분류해서 나온 건수이다. 표에서 보는 바에 의하면 ①과 ②의 결과는 각각 다른데 그 이유는 보고과정(제도)에서 ①을 분실했거나 ②에 기록을 빠뜨린 결과이다. 이와같이 이 지역내에서 발생한 출생수(영유아 등록부에 기재된 수)와 면사무소를 통해 신고된 출

표 2-1 출생신고서와 호적접수부의 출생기록수 비교

선 원 면	내 가 면	계
① 출생신고서 250(92.6)*	267(95.4)*	517(94.0)*
② 호적 접수부의 출생기록부 267(98.9)**	268(95.7)**	535(97.3)**
③ 출생기록 270	280	550

③은, ①과 ②를 각각 개별적으로 헤아려 본 숫자이다.
(*)*는 ①÷③의 %, (**)**는 ②÷③의 %이다.

표 2-2. 출생신고기록과 영유아 등록부수 비교

종류 \ 면별	선원면	내가면	계
영유아등록(출생수)	120(100)	136(100)	256(100)
출생신고기록	270(225)*	280(206)*	550(215)*

*는 출생수를 100으로 했을 때 출생 신고수를 계산한 것임.

生申告 기록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큰 차이를 볼 수 있다. (표 2-2 참고)

이 논문에서는 주로 이들간의 차이가 나는 이유, 원인 등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3) 出生事件과 出生申告 記錄의 關係

출생전수와 신고전수를 비교해 본다면 비록 자료의 출처가 서로 다른 것이라는 하나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이러한 資料에서 나타난 결과를 몇 가지로 区分해 볼 수 있다.

(1) 탐지역의 출생수와 출생신고 건수의 비교

통상의 예와는 달리 相反되는 결과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이유로서는 몇 가지 可能性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첫째로 타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본적지로, 둘째로 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주민등록지로 신고한 경우를 들 수 있으며 셋째로 累績申告 때문에 신고가 많아졌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하나하나 검토해 보기로 하자.

①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본적지로 신고한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는 표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호적부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영유아 등록부에 없는 것이 이러한 경우를 말한다. 조사대상 653건 중出生申告를 하지 않은 미 신고, 즉 75년도 영유아 등록부에만 기재된 103을 제외한 550건이 호적부에 있다. (표 3-2 참고)

이를 영유아 등록부와 출생신고서를 참고하여 75년 출생과 74년 이전 출생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 바出生申告記錄이 75년생으로 기재된 467건 중 미 신고 103을 제외하면 364건이 남는다. 신고건 364건 중 153건은 영유아 등록부에도 있고 동시에 호적등록부에도 기재되어 있으며 211건은 호적부에만 기재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364건 중 57%가 他 地域에 居住하면서 호적부가 있는 곳에 申告한 경우이다. 즉 타지역에서 호적지로 신고된 것이다. 그러나 출생신고 기록이 74년 이전出生으로 기재된 186건 중 39건 즉 21%는 74년도 이전 호적부와 동시에 영유아 등록부에도 기재되어 있으나 147건 즉 79%가 호적부에만 기재되어 있다. 해당년도 출생신고

표 3-1. 호적부의 출생신고 기록 유무에 따라 분류한 대상자수

년 생 \ 호 적	있다	%	없다	%	계	%
1975년생 (%)	364 (77.9)	66.2	103 (22.1)	(22.1)	467	71.5 (71.5)
1974년이전생 (%)	186 (100)	33.8	—	—	186	26.5 (28.5)
계 (%)	550 (84.2)	100.0	103 (15.8)	100.0	653	100.0 (100.0)

표 3-2. 영유아 등록부와 호적부의 출생신고 기록 유무비교

1975년 생						
영유아 등록부 \ 호적부	있다	%	없다	%	계	%
있 다 (%)	153 (59.8)	43	103 (40.2)	100	256	54
없 다 (%)	211 (100)	57	—	—	211	46
계 (%)	364 (77.9)	100	103 (22.1)	100	467	100 (100)

영유아 등록부와 호적부의 출생신고 기록유무 비교(2)

영유아 등록부	호적부						계
	있다	%	없다	%			
있 다 (%)	39 (100)	21.0	—	—	—	39	21.0
없 다 (%)	147 (100)	79.0	—	—	—	147	79.0
계 (%)	185 (100)	100.0	—	—	—	186	100.0

표 3-3. 주민등록부 출생신고 기록 유무에 따라 분류한 대상자수

주민등록부에	있다	%	없다	%	미상	%	계	%
1975년 생 (%)	224 (48.0)	79.7	243 (52.0)	66.0	—	—	467	71
1974년 이전 생 (%)	57 (30.6)	20.3	125 (67.2)	34.0	4 (2.2)	100.0	186	28.5
계 (%)	281 (43.0)	100.0	368 (56.4)	100.0	4 (0.6)	100.0	653	100.0

표 3-4. 영유아 등록부와 주민등록부의 출생신고 기록 유무 비교

영유아 등록부	주민등록부						1975년 생	
	있다	%	없다	%	미신고	계		%
있 다 (%)	114 (52.5)	51.0	—	—	103 (47.5)	217	244	(46.5)
없 다 (%)	110 (44.0)	49.0	140 (56.0)	100	— (—)	250	85.6	535
계 (%)	224 (48.0)	100.0	140 (30.0)	100	103 (22.0)	467	100.0	(100)

영유아 등록부와 주민등록부의 출생신고 기록유무 비교(2)

영유아 등록부	주민등록부						1975년 생	
	있다	%	없다	%	미상	%	계	%
있 다 (%)	32 (82.1)	56.1	7 (17.9)	5.6	—	—	39	21.0
없 다 (%)	25 (17.0)	43.9	118 (80.3)	93.4	4 (2.7)	100	147	79.0
계 (%)	57 (30.6)	100.0	125 (67.2)	100.0	4 (2.2)	100.0	186	100

표 3-5. 출생신고 시기

출생신고 시기	출생년	1975년	%	1974년 이전	%	계	%
2주 이내	180	49.4	1	0.5	181	32.9	
2주~4주	50	13.7	4	2.2	54	9.8	
4주~6개월	112	30.8	21	11.3	133	24.2	
7개월~1년	22	6.0	21	11.3	43	7.8	
1년 이상	—	—	112	60.2	112	20.4	
미상	—	—	27	14.5	27	4.9	
계	364	100	186	100.0	550	100.0	

표 3-6. 출생신고서 유무에 따라 분류한 대상자수

출생신고서	있다	%	없다	%	미상	%	계	%
1975년 생	357	69	7	21.2	103	—	467	71.5
(%)	(76.4)		(1.5)		(22.1)		(100.0)	
1974년 이전 생	160	31	26	78.8	—	—	186	28.5
(%)	(86.0)		(14.0)				(100.0)	
계	517	100	33	100.0	103	—	653	100.0
(%)	(79.2)		(5.0)		(15.8)		(100.0)	

기록에 있는 것을 전부 對象으로 하면 호적부에 기재되어 있는 550건의 출생신고 기록 중 192건(34%)은 영유아 등록부에도 기재되어 있으나 358건이 지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서 나타났다. 즉 총 신고전 중 調査地域에 居住하지 않으면서 조사지역에 신고한 것(본적지 신고율)은 66%이다. 이를보면 외부지역에 살면서 본적지로의 신고율이 상당히 높은 比率을 나타냈다. 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출생신고수와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출생신고를 비교하면 외부지역의 것이 본 지역의 것의 약 2.3가 가 된다.

② 타 지역에 居住하면서 주민등록지로 申告한 경우
(주민등록부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영유아 등록부에 기재 안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조사대상 653건 중 未 申告 103과 호적부에만 기재되어 있는 265를 합친 368예와 미상 4예를 除外한 281건이 주민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다.

75년 출생으로 기재된 467예에서 미신고 103을 제외한 364건의 신고전 중 224건이 주민등록부에는 기재되어 있다. 75년도의 당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들의 출생신고전 중 실재거주자의 출생신고 전의 비율은 51%를 차지한다. 71건은 영유아 등록부에는 없고 주민등록부에만 기재되어 있다. 75년도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부가 있는 곳에 신고한 경우가 당년도 주민등록지 출생신고의 51%였다. (표 3-4 참고)

74년 이전 출생으로 기재된 186건의 신고서 중 57건이 주민등록부에 기재되어 있었고 그 중 32건이 영유아 등록부에 있고 주민등록부에도 있는 居住者申告率로서 이는 56%를 보였으며 25건 즉 44%가 영유아 등록부에 있는 없고 주민등록부에만 기재되어 있어 이는 타 지역에서 주민등록 지역으로 신고한 것이다. 주민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의 예 281건의 申告書 중 136건, 즉 48%가 타 지역에 살면서 주민등록지 신고한 것이다. (표 3-4 참고) 전체 신고전中 他 地域에서 주민등록지로 신고한 것은 51%이다. 그러나 이 중의 대부분은 호적자신고인 점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③ 累積(失期申告로 인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75년에 신고된 총전수 550을 時期別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5에서 보는 바와같이 접수된 출생신고기록 550건 중 66%인 364건만이 실제로 75년에 出生한 숫자이다. 그러나 영유아 등록부의 출생일과出生申告書의 출생일을 비교해 본 결과 신고기일과 가까운 날자를 출생일로 신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이 발견되었다. 확인이 가능한 조사지역 내의 거주자로서 75년 출생자 256건

표 3-7. 영유아등록부와 출생신고서 유무 비교

영유아 등록부	1975년생					
	있다	%	없다	%	계	%
있 다 (%)	149 (58.2)	41.7	107 (41.8)	92.3	265 (54.8)	56.8
없 다 (%)	208 (98.6)	58.3	3 (1.4)	7.7	211 (45.2)	43.2
계 (%)	357 (76.4)	100.0	110 (23.6)	100.0	467 (100.0)	100.0

영유아 등록부와 출생신고서 유무비교(2)

영유아 등록부	1974년생 이전					
	있다	%	없다	%	계	%
있 다 (%)	39 (100.0)	24.4	—	—	39 (100.0)	21.0
없 다 (%)	121 (82.3)	75.6	26 (17.7)	100.0	147 (100.0)	79.0
계	160 (86.0)	100.0	26 (14.0)	100.0	186 (100.0)	100.0

中未申告 103을 제외한 153건과 출생신고기록이 75년 이전 출생으로記載된 기록중 74년 이전 영유아 등록부에 기록된 39건을 합친 192건을 확인한 결과 99건 55%가 실제 출생일과 출생신고서 기록의 출생일이 서로 달랐다. 이것의 전부가 출생일을 申告日에 가깝게 고쳐서 신고한 것이었다.

(2) 1975년 지역내 거주자의 출생신고율과 외부에서 접수된 출생신고율의 비교

1975년 지역내 실제 출생은 256건 이었고 동기간 동 지역의 출생신고서는 517건이었다. 표 3-6에서 보는 바와같이 75년생으로 기록된 467건중 未申告 103을除外하면 364건이 75년 호적지 출생이다.

이것을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표 3-7 참고)

첫째로 거주자의出生申告에關聯된 이유를 들 수 있다. 75년 출생신고 기록 364건 중 출생신고서가 없는 7예를 제외한 357예 가운데 75년도 영유아 등록부에 기재된 건수, 즉 실제 거주자는 149건으로 接受된 출생신고서의 42%만이 地域內 거주자였다. 또 75년 영유아 등록부에 기재된 256건중 149건이 75년 내에 신고되어서 58%의 거주자의當年分 申告率을 보였다. 그러나

거주자 출생 256건 중 小數가 주민등록지나 호적지 신고를 위해 타 지역으로 신고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 수는 상당히 적을 것으로 예측된다. 왜냐하면 호적지나 주민등록지가 이 지역일 경우에는 申告處가 이곳으로 우송되어 정리되기 때문이다.

둘째로 外部에서 이 지역으로 신고된 것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75년에 접수된 출생신고서 517건중 75년도 조사지역내의 출생수 256건과 겹치는 수가 149건으로 全體의 29%였다. 그리고 同地域에 거주자로서 74년도 이전 출생중 75년에 신고한 수가 39건으로(74년도 이전 영유아 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의 8%이다. 따라서 75년 출생신고서 517건중 영유아 등록부에 기재된 188건 36%를 제외한 329건 64%가 出生事件이 外部에서 발생한 것이다.

4. 要約 및 結論

통상의 예로서는 당년분推定出生數에 비해出生申告率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양재도의 5인 조사와 經濟企劃院調査 등의 연구 경과에도 나타났으나 본 조사에서는 이와는 반대 현상을 보였었다. 즉 당년분 실제 출생수(256)에 비해出生申告數(550)는 월등히 많은 수를

보였다. 이것은 출생사건과 출생신고의 關係成立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75년도 居住者 中 당년의 출생신고율은 총 출생건 중 59%이다.

2. 調査地域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호적지로 신고한 (즉 출생사건이 외부에서 발생한) 경우가 전체신고의 66%였다.

3. 조사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지(조사지)로 申告한 경우가 전체신고의 51%였다. 그러나 이는 주민등록지와 호적지가 같기 때문에 일어난 現象이다.

4. 1974년 以前出生이 1975년에 출생신고한 경우가 전체 申告件數의 34%였다.

5. 당지역에 居住하면서 당지역에서 발생한 출생건 중 41%는 미신고이었다.

6. 접수된 출생신고 기록中 法定期日內(사건 발생 2주 이내) 신고는 단 33%이다.

7. 현지에서 출생한 사람중 신고서에 기록된 출생일과 실제 출생일이 다른것이 55%였다.

8. 출생신고 기록中 出生申告書가 없는 (分失된)것이 6%였다.

9. 출생신고 기록中 호적접수 대장에 기재 안된 것이 3%였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출생신고는 호적지 신고와 주소지 신고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대개의 경우 주민등록지에서 신고하는 것 보다는 호적지에로 신고하는 율이 훨씬 높다. 즉 타 지역에 살면서 본적지 지역으로 申告하는 比率이 많기 때문에 출생신고율이 출생건수 보다 높게 나타났다.

출생신고 자료를 출생율의 算出에 직접 이용한다는

것은 많은 方法論 上의 문제를 지닌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지연신고의 문제와 漏落申告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 즉 출생신고건수는 높으나 이것은 외부에서 출생한 아이를 이곳으로 신고한 까닭이며, 실제 거주지 출생증신고율은 낮다는結果를 보여준다. 적기신고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한, 출생신고 자료에 의해 出生率을 산출하는 것이 다시 문제가 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문제들은 出生申告制度 자체의 문제와 住民의認識과 관련된 문제 등을 고려하여 재 檢討되고 깊게 研究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현

- 1) 경제기획원 : 1966년, 인구동태 통계, 1968.
- 2) 양재모외 5인 : 한국가족계획사업의 지원 방안과 정 확한 인구동태파악을 위한 연구, 연세대학교, 1969
- 3) 가정기록부 : 연세대학교 보건시범사업소에서 쓰고 있는 기록으로 각 가구별로 인구 및 문화경제 상태와 인구동태등을 기록한 자료로 행정리 단위의 마을보건소에 비치되어 있다.
- 4) 가정간강요원 : 연세대학교 보건시범사업소에서 개발한 제도로서 면보건요원 제도밑에 행정리 단위에 정체공 및 보건교육을 주 업무로 하는 요원을 둔 것으로 30—40대의 가정주부들로 구성되어 있다.
- 5) 다목적요원 : 연세대학교 보건시범사업소에서 현재면 보건요원 즉 가족계획 모자보건 결핵담당의 단일 목적 요원을 보건업무의 능률적 운영을 위해 단기 훈련을 거쳐 지역을 분담하고 다목적으로 일하게 하였다.